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
- 「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정책」 반영
숙박업의 경우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대상에서 제외

4. 참고사항
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, 제50조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조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

• 2009. 3. 27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“한시적 규제유예 제도” 후속 조치로서 「자원의 절약과

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등 39개 법률이 일괄 개정됨에
관련 규정 정비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
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임

○ 주요 내용은

- 「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정책」 중 1회용품 사용 규제대상에서
숙박업이 제외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[별표1]

○ 검토 결과

- 본 조례안은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개혁 과제 280건
중 하나로 경기 회복시까지 한시적으로 규제시행을 중단하거나
또는 완화하도록 한 “한시적 규제유예 제도” 후속 조치 사항으로
숙박업이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서 제외됨에
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숙박업의 영업활동 지원과
경제위기 조기극복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